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신용하 의원 외 11명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신용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신용하·김근한·김낙관·김재우 김춘남·박교상·소진혁·안주찬 양진오·이명희·정지원·허민근 의원(12명)

1. 제안이유

구미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과 범위, 지원방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7조)

라. 비밀준수 및 정보제공·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마.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아동복지법」 제3조,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3조의 2, 제928조, 제958조의 14, 제1019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4. “한정승인”이란 「민법」 제1019조에 따른 한정승인을 말한다.
5.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본인이 미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미성년후견인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거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

나. 본인이 성년인 경우: 「민법」에 따른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 및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

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4조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①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구미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

(앞면)

신 청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보 호 자 (대 리 인)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관 계	
	대리신청 사유			
법률지원 요청내용				

「구미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뒷면)

개인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지원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재산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담당 법률대리인
2. 재산정보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3. 재산정보 수집 항목: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재산조회 통합처리 결과
4. 재산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상속포기, 한정승인)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주민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업무처리 완료일로부터 5년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인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

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

어야 한다.

제959조의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①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가정법원, 임의후견인, 임의후견감독인 등은 후견계약을 이행·운영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지원방법) 법률지원은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평균 1억원 미만 예상

4. 작성자 : 미래도시기획실 교육청소년과장 김종미